

이사회 규정

제 1장 총 칙

제 1조 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【적용범위】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조 【권 한】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본 규정 제12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본 규정에서 이사회에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.

제 2장 구 성

제 4조 【구 성】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조 【의 장】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단, 동 순위자가 복수인 경우 동 직위 선임자를 우선으로 한다.

제 6조 삭제

제 3장 회 의

제 7조 【종 류】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조 【소집권자】

- ① 이사회는 의장(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)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(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)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(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)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조 【소집절차】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정기이사회는 1주일 전, 임시이사회는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

제 10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1조 【부의사항 등】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주주총회의 소집
- 영업보고서의 승인
- 재무제표의 승인
- 정관의 변경
- 자본의 감소
-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 계속
- 주식의 소각
-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-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주식배당 결정
- 중간배당의 결정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이사의 보수
- 상법·자본시장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
-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
-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
-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전략적 사업방향
-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
-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

-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
- 공동대표의 결정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·폐
-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[별표1] 기재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투자, 출자, 자산의 취득·처분, 자금의 차입 및 담보제공 또는 보증
- 결손의 처분
- 신주의 발행사항의 결정,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
-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
- 사채의 모집
- 준비금의 자본전입
- 전환사채의 발행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
- 자산재평가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

5. 기 타

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2조
삭제

제 13조
삭제

제 14조
삭제

제 15조 【위 임】
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중 법령 또는 정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 할 수 있다.

제 16조 【관계인의 출석】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7조 【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】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8조 【의사록】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9조 【사무국】

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20조 【이사회 내 위원회】

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감사위원회
2.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르고,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21조 【집행임원】

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(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등)을 선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

제 22조 【상무회】

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상무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별표1

구 분	이사회 부의기준
시설투자 (신규 및 증설 투자)	1건당 총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
출자 및 타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	1건당 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10%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
자산의 취득· 처분 및 영업의 일부양도	1건당 금액이 직전 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10%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
자금의 차입 (한도 거래 포함)	차입 1건당 500억원 이상
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	1건당 500억원 이상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7년 1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1999년 4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09년 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